

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25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10.
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1. 개정이유
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구청장·군수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,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, 시장이 영업시간 제한, 의무휴업 이행을 대형유통기업·구청장·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대구시 조례에 정하는 것은 “법상 근거 없이 법률에 따른 구청장·군수의 권한행사를 제약하는 것으로서 소관 사무원칙에 위반됨”
- 또한,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근거가 없는 특정품목 영업제한을 대형유통기업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대구시 조례에 정하는 것은 법상근거 없이 대형유통기업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비쳐져, “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”는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개정 권고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10조(영업시간 등의 제한) 제1항, 제2항 전체 삭제

- 조례 제10조 제1항 “시장은 법에서 정하는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이행을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 또는 구청장, 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
 1.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
 2. 월2회로 지정되는 의무휴업일”
- 조례 제10조 제2항 “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의 영업활동으로 인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이 특정 품목에 대하여 영업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에 대하여 그 특정품목의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”

3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나. 관계법령 :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외(※붙임 3)

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18. 9. 10.(월) ~ 10. 1(월)(20일간)
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4) 부패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5)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 붙임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2]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10조(영업시간 등의 제한)</u> <u>① 시장은 법에서 정하는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이행을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 또는 구청장, 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</u> <u>1.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</u> <u>영업시간 제한</u> <u>2. 월 2회로 지정되는 의무휴업일</u> <u>②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의 영업활동으로 인근 중소 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이 특정 품목에 대하여 영업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에 대하여 그 특정품목의营业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</u>	<u><삭 제></u>

[붙임3]

관 계 법 령

□ 유통산업발전법

제12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

- ①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,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(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)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영업시간 제한

2. 의무휴업일 지정

- ②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③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들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,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[붙임4]

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 :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함.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대형유통기업 및 구·군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.

4. 작성자 : 일자리경제본부 민생경제과장 정기영